옥천군 공고 제2019-902호

옥천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

「옥천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
2019년 10월 15일

옥 천 군 수

1. 자치법규명

○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2. 제정이유

○ 관광객 및 옥천군민 등에게 전통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옥천전통문화체험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3. 주요골자

○ 설치 목적과 위치, 내부 시설에 관한 사항(안 제1조부터 제3조)

○ 수행 사업과 개관 및 휴관, 운영시간 등에 관한 사항(안 제4조부터 제7조)

○ 시설 이용료와 감면, 반환 기준에 관한 사항(안 제8조부터 제10조)

○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)

○ 관리 · 운영 및 위탁,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(안 제12조부터 제13조)

○ 사용 · 수익허가에 관한 사항(안 제14조)

○ 이용의 제한,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(안 제15조부터 제16조)

4. 의견제출

○ 「옥천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」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(참조: 문화관광과장)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※ TEL : 043) 730-3412, FAX : 043) 731-1986

가.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주소, 전화번호 등

5. 붙임

○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부.

○ 의견서 양식 1부.

옥천군조례 제 호

옥천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옥천을 찾는 관광객 및 군민 등에게 전통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옥천전통문화체험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치) 옥천전통문화체험관(이하 “체험관” 이라 한다)은 옥천군 옥천읍 향수길 100 일원에 둔다.

제3조(시설) 체험관에 설치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전통문화체험동
2. 한옥숙박체험동(2개동)
3. 전시 및 편의시설동
4. 커뮤니티센터
5. 그 밖에 체험관 내 각종 부대시설 등

제4조(사업) 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전통문화 교육과 체험프로그램 운영
2. 한옥숙박체험 운영
3. 전시 및 편의시설 등의 관리운영
4. 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
5. 그 밖에 체험관 설치 목적에 적합한 사업

제5조(개관 및 휴관) ① 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.

1. 매주 월요일, 1월 1일, 설날, 추석
2. 체험관의 시설 점검, 보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3. 그 밖에 옥천군수(이하 “군수” 라 한다)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

② 군수는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체험관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.

제6조(운영시간) ① 체험관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.

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험관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.

③ 체험관 시설 중 한옥숙박체험동 이용객은 입실하는 날 오후 3시부터 퇴실하는 날 오전 11시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군수는 자체실정에 맞게 변경할 수 있다.

제7조(휴관일 등 공지) 군수는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정하거나 제5조제2항에 따라 휴관일을 조정하는 경우 및 제6조제2항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체험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.

제8조(체험시설 등의 이용료) ① 군수는 제3조 각 호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시설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시설이용료는 별표 1과 같

다.

② 군수는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시설이용 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.

제9조(이용료의 감면) 군수는 제3조 각 호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시설이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
제10조(이용료의 반환)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.

1. 관리·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
2.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
3.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의 예약취소 등 귀책사유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

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이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.

제11조(프로그램 운영) ① 군수는 체험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제1항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저명인사 또는 외래전문 강사, 공연단체 등을 초빙할 수 있다.

③ 제2항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공연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2조(관리·운영 및 위탁) ① 체험관의 관리 및 운영은 군수가 한다. 다만,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

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「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③ 군수는 위탁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3조(지도감독) ① 군수는 체험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거나 사실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점검 또는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필요한 때에는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서류, 물건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
제14조(사용·수익허가) 군수는 체험관의 효율적 관리·운영을 위하여 운영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의 일부를 사용·수익허가 할 수 있다.

제15조(이용의 제한)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거를 명할 수 있다.

1.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

2. 체험관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할 때

3.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체험관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우려될 때

4.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체험관 이용이 불가능할 때

5. 그 밖에 체험관 운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 될 때

제16조(보험가입) 군수는 시설운영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손실 등에 대비하여 상해 및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하다.

제17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「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시설이용료 (제8조제1항 관련)

가. 체험시설 이용료(체험료)

구분	기 준		이용료
전통문화체험	대인(25세 이상)		10,000원 이내
	소인(24세 이하)		5,000원 이내
	* 1인 1회 기준 / 재료비 별도		
한옥숙박체험	4인실/1박	주중	50,000원 이내
		주말	70,000원 이내
	8인실/1박	주중	90,000원 이내
		주말	140,000원 이내
	* '주말'은 입실 다음 날이 토요일, 공휴일인 경우		

※ 체험시설 이용료는 위 금액의 범위 내에서 군수가 정한다.

나. 부대시설 이용료

구분		기 준	이용료
부대시설	회의실	3시간 이내	50,000원
		* 1시간 초과 시 마다 10,000원 추가	
	전시 및 체험실	1일	50,000원
	야외공연장	1일	100,000원

[별표 2]

시설이용료 감면기준 (제9조 관련)

구 분	감 면 율	
	별표1 가목의 경우	별표1 나목의 경우
1. 옥천군이 주최·주관하는 행사의 경우	100%	100%
2. 옥천군에 소재하는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	-	50%
3. 옥천군민이 이용하는 경우(주민등록법에 따라 옥천군에 주소를 두어야 함)	30%	50%
4. 교육관련 기관·단체가 학생연수, 수련 등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(기준정원 20명 이상, 고등학생 이하)	30%	-
5.「국가보훈 기본법」에 따른 희생·공헌자가 이용하는 경우	30%	-
6.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심한 장애인(기존 1급 ~ 3급)이 이용하는 경우	30%	-
7. 미성년자 3자녀 이상인 다자녀 가구가 이용하는 경우	30%	-

※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큰 항목만 적용한다.

※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.

[별표 3]

시설이용료 반환기준(제10조제2항 관련)

구 분	환급 및 배상기준
1. 관리·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	○ 「소비자기본법」 제16조 및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배상한다.
2.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	○ 중대한 재해의 발생이 예상되어 우리군 지역에 기상경보 발령이 발표된 경우 납부금액 전액을 환급한다.
3.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의 예약취소 등 귀책사유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	○ 「소비자기본법」 제16조 및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예약금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처리하고 환급한다.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○ 조 례 명 :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　　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조 례 안	의　　견